

발 간 등 록 번 호

진흥원-2024-901

2024년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 및 지원 방안 모색

2024. 3. 28.(목) 14시

KDB 생명타워 B2층 동자아트홀



한국보육진흥원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 및 지원 방안 모색 포럼

- 일 시 : '24. 3. 28.(목) 14:00~16:30
- 장 소 : KDB생명타워 B2층 동자아트홀
- 주 최 : 한국보육진흥원
- 진행일정

사회 : 김윤지 부장 (한국보육진흥원 연구개발부)

구분		내용
등록	13:30-14:00 (30분)	접수 및 일정안내
개회식	14:00-14:20 (20분)	국민의례 개회사 - 나성웅 원장(한국보육진흥원)
주제발표 I	14:20-14:50 (30분)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현장 역량 강화 - 양성은 교수(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주제발표 II	14:50-15:50 (60분)	운영주체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사례 1) 서초구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가족중심 조기개입 - 최진희 센터장(서초아이발달센터) 2) 우리 아이 발달 신호등 - 송정 센터장(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3) 어린이집 원아의 발달지원을 위한 놀이치료 운영사례 - 홍기목 소장(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주제발표 III	15:50-16:20 (30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폐회	16:20-16:30 (10분)	설문조사 및 마무리

Contents

주제발표 I

-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현장 역량 강화 11
- 양성은 교수(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주제발표 II

운영주체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사례

- 1) 서초구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가족중심 조기개입 23
- 최진희 센터장(서초아이발달센터)
- 2) 우리 아이 발달 신호등 33
- 송정 센터장(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 3) 어린이집 원아의 발달지연을 위한 놀이치료 운영사례 45
- 홍기묵 소장(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前 조은어린이집 놀이치료사)

주제발표 III

-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55
-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2024년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 및 지원 방안 모색

개회사

나성웅 원장(한국보육진흥원)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장 나성웅입니다.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대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울러 실제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작게는 기관과 가정에서 협력하고, 크게는 국가와 사회가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언어, 사회성 등 발달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발달은 전 생애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시기마다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기 발달 속도는 개별 아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대되는 최소 정도의 발달이 늦을 경우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 '장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의 세부 과제로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발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한 위험을 가진 영유아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영유아에게 적기 적시의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 번 포럼에서는 발달 지연에 대한 정의, 현황과 더불어 영유아 기관 재원율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발달 지연 영유아를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주체별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발달 지원 체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인하대학교 양성은 교수님, 육아정책연구소 강은진 선임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사례를 나누어 주신 서초아이발달센터 최진희 센터장님,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송정 센터장님, 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홍기묵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발달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가 전문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의 영유아와 부모, 기관의 교사들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모색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장 나성웅

2024년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 및 지원 방안 모색

주제발표 I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현장 역량 강화

양성은 교수(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현장 역량 강화

양성은(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1.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이해

(1) 개념

장애 등록 영유아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 등록이 된 영유아를 말한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는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 아동을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별표,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경계선 지적 기능은 지적 수준이 평균 미만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 정도가 지적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수준을 말한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인 DSM-IV에서는 경계선 지적 기능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IQ 71~84에 해당하며 임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지적장애라고 보지 않고 있다(백선정 외, 2021). DSM-5에서는 경계선 지적 기능과 경도 지적장애의 차이만을 언급하였으며 구체적인 IQ 수치와 판별을 위한 표준화 검사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백선정 외, 2021). 교육 분야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지능(IQ 71~84)을 가지고 있고 지적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인지적, 학업적,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느린 학습자(Slow learner)(백선정 외, 2020; 김동일, 김은삼, 김희운, 조은정, 2022)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 개정된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연구에서는 장애 판별을 받지는 않았으나 학업이나 일상생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중재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특정 장애가 생길 개연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아동을 고위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는 장애 위험 아동(children at risk)이라고도 하며, 낮은 학업 성적, 학교 부적응, 정서·행동상의 문제 등을 보이는 아동을 주목하고 있다(정대영, 박희찬, 황순영 외, 2017). 이처럼,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장애 위험군', '발달지체',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적 기능', '느린 학습자',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유아'(백선정, 배성현, 최금순, 2020)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발달 지연 영유아(at risk)는 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 하나 이상이 또래에 비해 발달 속도가 느리거나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영유아로 개념화하고자 한다(강은진, 권미경, 박창현, 최윤경, 박혜원, 최일선, 이경옥, 김형미, 양성은, 김영아, 2022).

장애 진단 유무로 발달 지연 영유아와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장애아동이나 발달장애인도 발달 지연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장애 진단이 없어도 위험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개념 정의를 시도한다는 점을 밝힌다. 중요한 것은 발달 지연 영유아가 또래와 유사한 발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며, 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심각한 경우 정서 및 행동장애를 보인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이 없으면 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권은주, 남미경, 2019).

(2) 현황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는 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 평가이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발달이상을 선별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 평가 권고로 나뉜다(은백린, 2017). 심화 평가 권고는 K-DST를 이용한 선별 평가 결과, 발달 지연 확진을 위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단계(은백린, 2017)에 받게 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이상 검사를 받기 시작하는 18개월 이후부터의 영유아 중에서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들은 발달 지연 확진을 위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김형진, 이대균, 2021). 그러나 영유아 건강검진 상 발달 선별검사 방법은 주 양육자가 검사 문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검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정혜윤, 2018)가 있다. 또한 심화 평가 권고를 받더라도 부모가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김형진, 이대균, 2021) 조기 개입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에, 영유아와 장시간 함께하는 교사가 이를 파악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발달 지연 영유아는 그 개념상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 등록된 장애아동 통계를 바탕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만 7세 이전 장애 등록 영유아 수는 15,290명이며(보건복지부, 2023a), 2023년 4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2,022개소와 유치원 2,738개 원을 이용하고 있다(교육부, 2023). 장애 등록 영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801개소의 (특수보육 미지정) 일반 어린이집에 1,002명, 177개소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6,170명, 1,393개소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6,143명이 재원 중이다(2022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2023b). 설립 구분에 따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가장 많은 장애 등록 영유아들이 있고, 다음으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 순으로 나타난다.

〈표 1〉 2022년 일반 어린이집 장애아동 현원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기관 유형							
		총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일반	어린이집 수	801	120	63	29	430	126	7	26
	장애아동 현원	1,002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수	177	48	100	5	23	1	-	-
	아동 정원	8,395	1,955	5,297	277	848	18	-	-
	아동 현원	6,170	1,572	3,728	202	657	11	-	-
	보육교직원 수	2,671	670	1,625	85	285	6	-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수	1,393	1,139	48	39	142	9	3	13
	아동 정원	113,083	93,961	4,512	3,322	13,697	175	72	2,344
	아동 현원	6,143	4,681	238	235	927	13	7	42
	보육교직원 수	2,190	1,706	80	82	299	4	4	15

자료: 보건복지부(2023b), 2022년 보육통계.

2.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

(1) 필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보고에 따르면, 영유아의 장애가 처음으로 인지되는 시기는 태아기부터 2세 미만 이 57.6%에 이르지만 장애로 바로 진단되는 경우가 10.3%, 발견 후 1년 미만에 진단하는 경우가 22.8%로 나타났다(황주희, 이한나, 김현승, 심석순, 최복천, 김용진, 김혜수, 김지민, 2021). 이는 영유아의 장애를 인지하는 시점과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하는 사이에 시차가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영유아의 상태가 경증이라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라면 진단은 더욱 미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간극이 커질수록 영유아를 위한 개입이 지연된다는 점이다. 장애가 야기하는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달 초기일수록 장애를 더 일찍 발견하고 더 빠르게 개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발달 지연의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를 위해 조기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비율이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 발달 지연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가 현장 교사들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급 내 발달 지연 영유아를 인식해도 부모와의 갈등을 우려해 협의하기 어려워하며, 전문 지원 인력을 찾지 못함을 보고하고 있다(최자영, 이순자, 2021; 한연주, 김용희, 2018).

구체적인 사례로 강은진, 권미경, 박창현, 최윤경, 박혜원, 최일선, 이경옥, 김형미, 양성은, 김영아(2022)의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14명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 영유아와 관련된 경험 및 요구를 조사한 바 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40.4%가 발달 지연 영유아를 교육 및 보육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발달 지연 영유아를 교육·보육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49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발달 지연의 판단 근거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교사들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판단의 근거로 또래와의 관찰 비교(42.2%)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18.5%), 교사의 관련 배경지식(15.3%), 발달평가를 위한 검사 도구 활용(14.3%), 동료 교사와의 면담(4.5%), 전문 서적의 정보 활용(3.9%),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발달 지연의 판단 근거

응답	비율(%)
반 또래와의 관찰 비교	42.2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18.5
교사의 관련 배경지식	15.3
발달평가를 위한 검사도구 활용	14.3
동료교사와의 면담	4.5
전문 서적의 정보 활용	3.9
기타	1.4

자료: 강은진 외(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1).

발달 지연 영유아 담당 경험이 있는 교사 491명에게 발달 지연 영유아로 의심될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교사들은 발달 지연 영유아로 의심될 때 동료 교사나 원장 및 관리자와 상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69.5%). 그리고, 의심되더라도 좀 더 지켜보는 경우(16.1%), 전문가의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9%), 부모에게 알리는 경우(4.9%), 여러 영유아를 교육·보육하므로 발달 지연 영유아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경우(0.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 발달 지연 영유아로 의심 시 대처 방법

응답	비율(%)
동료교사나 원장 및 관리자와 상의	69.5
의심되더라도 좀 더 지켜봄	16.1
전문가의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	9
부모에게 알림	4.9
여러 영유아를 교육·보육하므로 장애 위험 영유아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음	0.4
기타	0.2

자료: 강은진 외(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1).

발달 지연 영유아를 담당했던 교사 491명은 발달 지연 영유아를 담당할 때 어려운 점을 <표 4>와 같이 응답했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다(20.8%). 다음으로 부모와의 갈등 발생 우려(20.2%), 기관 내 별도 인력 부족

(18.9%), 영유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14.5%), 교사 스스로 교육적 지원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11.6%),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 및 여력 부족(6.3%), 관련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나 기관 부족(4.9%), 기관 내 원장 및 관리자의 이해 및 협력 부족(1.6%), 기타(1.2%) 순서의 비율이 나타났다.

〈표 4〉 발달 지연 영유아 담당 시 어려운 점

응답	비율(%)
발달 지연 영유아와의 관계 형성 및 소통 방법 부족	20.8
부모와의 갈등 발생 우려	20.2
기관 내 별도 인력 부족	18.9
영유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	14.5
교사 스스로 교육적 지원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11.6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 및 여력 부족	6.3
관련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나 기관 부족	4.9
기관 내 원장 및 관리자의 이해 및 협력 부족	1.6
기타	1.2%

자료: 강은진 외(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1).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장 교사들은 주로 또래와의 관찰 비교로 발달 지연 영유아를 판단하며, 발달 지연 영유아로 의심이 될 때는 동료 교사나 원장과 상의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은 발달 지연 영유아를 담당할 때 이들과의 관계 형성 및 소통 방법이 부족하고, 이들 부모와의 갈등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이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2) 당위성

윤석열 정부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조기 개입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할 것을 추진하며, 원스톱 즉시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발달평가, 재활치료, 교육, 가족 지원을 제공받는 지역 의료·보육·교육·상담 기관 간의 연계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하여 아동 건강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 정부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관계부처 합동, 2021. 05. 12.)에서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프로그램을 강조한 것보다 더 나아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발달 지연 영유아까지 확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원 현황

장애 영유아 및 발달 지연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는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전국 장애인복지관은 총 254개(보건복지부, 2022)이며, 발달 지연 영유아에 개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사업을 별도로 명시하는 곳은 전국 35개소로 조기 발견 및 진단과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강은진 외, 2022), 전국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발달 지연 영유아 검사 및 지원 사업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전국 장애인복지관 발달 지연 영유아 검사 및 지원 사업 실시 현황

단위: 개

시도	개수	주요 사업내용
서울	7	장애 진단 대기 가정의 보호자 코칭 및 심리 지원, 발달 지연 영유아 발달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 및 발달 재활 지원
부산	4	장애 의심 및 발달 지연 영유아 가정지원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부모 코칭, 보육기관 방문하여 발달 지연 아동 조기 선별 진단
대구	1	36개월 미만 장애 및 위험군 영아 및 가족 조기 개입
인천	2	장애 영아 조기 재활 지원
경기	9	지역 유관기관, 교육·보육기관의 영유아 언어 검사 실시하여 장애 의심 영유아 조기 개입, 해당 영유아의 부모 코칭, 교육기관 방문 상담, 통합어린이집 이용자 중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방법 코칭
충북	1	가정 내 조기 개입이 필요한 발달 지연 아동 가정 상담 및 부모 코칭, 어린이집 방문하여 영유아 행동 관찰 및 교사진과 지원 방안 의논
충남	3	유아교육기관 자원 중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 치료사가 교육기관 및 해당 가족 방문하여 치료방법 지도
전북	1	재활치료 내담자의 언어, 심리, 작업 등 발달 및 장애 정도를 진단/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순회 진단 실시
전남	2	아동 기관 대상으로 언어발달 선별검사
경북	2	영유아발달 검사, 부모코칭, 교육, 발달지연이 추정되는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대상으로 언어 및 작업평가, 소견서 발행, 담임교사 및 보호자 상담
경남	1	지역의 어린이집을 통해 장애 의심, 발달 지연 아동 선별, 진단, 교육
제주	2	장애아 통합보육 기관 상담 의뢰 시 방문 및 전화상담, 어린이집 유아 발달 선별검사
계	35	-

자료: 강은진 외(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1).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장애 영유아 및 발달지연 영유아와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강은진 외, 2022), <표 6>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발달 지연 영유아 관련 사업 현황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 등의 관련 전문가가 미배치되거나 1명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지원을 위한 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강은진 외, 2022).

〈표 6〉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 지연 영유아 관련 사업 현황

시도	장애 지원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발달 검사	사업 대상				비고
				발달 지연 영유아	교사	가족	어린이집	
서울	1	1	0	1	1	1	1	- 서울재활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서울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역량 강화 지원(교육, 자문, 연구모임) - 치료사 오리엔테이션(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파견) 치료사 및 특수교사 대상)
부산	1	0	0	0	1	0	1	- 장애아 담당 교사 교육, 온라인 정보 제공, 우리아이 발달지원단 연계
대구	1	1	0	1	1	1	1	- 발달상담지원 프로그램 - 취약보육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치료실(가정양육 지원)
인천	1	1	0	1	1	1	1	- 영유아 건강성장 심리지원
광주	0	0	0	0	0	0	0	
대전	1	0	0	0	0	0	1	
울산	1	1	0	0	0	0	0	-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코칭
세종	1	1	1	0	0	0	0	- 아이사랑플래너: 발달검사 지원 - 발달장애 영유아 부모교육: 세종장애인부모회 주관
경기	1	1	0	1	1	1	1	
경기북부	0	0	0	0	0	0	0	
강원	1	0	0	0	1	0	1	- 취약보육지원 사업
충북	1	1	0	1	1	1	1	
충남	1	1	1	1	1	1	1	- 충남형 긍정행동발달 프로젝트 / 튼튼교실
전북	0	0	0	1	1	0	0	
전남	1	0	0	1	1	0	1	
경북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주: 1=있음, 0=없음 결과임.

자료: 강은진 외(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1).

〈표 7〉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 지연 영유아 사업 관련 인력 현황

단위: 명

시도	특수교사 수	상담 전문 요원 수	기타 장애 담당 인력 수	총계
서울	1	1	0	2
부산	0	0	1	1
대구	0	0	4	4
인천	0	0	0	0
광주	0	1	0	1
대전	0	0	0	0
울산	1	0	2	3
세종	0	0	0	0
경기	0	1	0	1
경기 북부	0	0	0	0
강원	0	0	0	0
충북	0	4	3	7
충남	0	1	2	3
전북	0	0	0	0
전남	0	0	0	0
경북	0	0	0	0
경남	0	0	0	0
제주	0	0	0	0
계	2	8	12	22

이상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 영유아와 발달 지연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달체계 간의 배치 인력, 지원 사업 내용의 격차가 크다(강은진 외, 2022).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조기 개입의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개입을 이루는 것은 불가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로 등록되거나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전형적 발달 패턴을 거치지 못하는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이미 진단을 받은 장애 영유아 외에 발달 지연을 지닌 영유아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김진호, 차재경, 2015). 이에, 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교육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선별 역량 강화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현장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선별이 우선되어야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개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교사가 부모와 유기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며, 추후 특수교육 및 전문 상담 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일상적 보육 및 교육 상황에서 영유아를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얻은 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단지, 이러한 교사의 주관적 정보가 타당성 있는 선별 도구로 연결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최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용으로 발달 지연 영유아의 선별을 위해 개발된 K-SIED(한국영유아발달 선별검사, 강은진 외, 2022)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기 개입 역량 강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장에는 이미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고유의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로서 장애아동을 위한 적극적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발달 지연 영유아들을 위해서는 일반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들의 개입 역량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이 발달 지연 영유아를 선별한 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23c). 서비스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에 한하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된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현재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9개 영역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 중 놀이심리재활 영역은 놀이를 매개로 개입함으로써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중재하기에 적절한 서비스라고 하겠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이수하며, 인증을 통해 취득 자격을 갖게 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이 필요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요청하고, 이들이 보육 및 교육 현장에 파견되어 발달 지연 영유아에게 개입할 수 있다면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참고하여 인증과정의 일부를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고유의 직무가 있으므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수준이 될 필요는 없지만, 발달재활서비스 인증제 교과목의 내용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는 유효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 파견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통한 실습 교육 등도 추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아래 표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교과목을 정리하며, 이들의 개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안해본다.

〈표 8〉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을 위한 일반교사 역량 강화 지원 방안

참고 가능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 인증제 교과목		온라인 역량 강화	오프라인 역량 강화
지식	장애아동의 이해, 발달정신병리학, 아동발달, 아동권리 및 복지 등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실습
기술	아동상담, 놀이치료,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가족상담 등		

참고문헌

- 강은진, 권미경, 박창현, 최윤경, 박혜원, 최일선, 이경옥, 김형미, 양성은, 김영아(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 권은주, 남미경(2019). 일반어린이집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요구. 상담심리교육 복지, 6(2), 35-50.
- 교육부(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관계부처 합동(2021).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 김동일, 김은삼, 김희은, 조은정(2022). 느린학습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3(3), 669-696.
- 김진호, 차재경(2015).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국내연구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27-151.
- 김형진, 이대균(2021). 어린이집 일반학급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의 어려움과 요구
- 보건복지부(2023b). 2022년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3c). 2023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백선정, 배성현, 최금순(2020).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 은백린(2017). (개정판)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사용지침서. 서울: 질병관리청.
- 정대영, 박희찬, 황순영 외(2017).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개정 연구(2/2): 별책.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정혜윤(2018). 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결과 분석에 따른 발달지연 유아 선별 및 지원방안 탐색. 특수교육재활 과학연구, 57(4), 139-156.
- 최자영, 이순자(2021). 장애위험 영유아 지도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식과 지원 요구. 유아특수교육 연구, 21(3), 53-87.
- 한연주, 김용희(2018).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통합 모형 구축 -수원시를 중심으로-. 자폐성 장애연구, 18(3), 29-59.
- 황주희, 이한나, 김현승, 심석순, 최복천, 김용진, 김혜수, 김지민(202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인터넷 자료]

- 보건복지부(2022).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_장애인복지관 현황 > 장애인복지관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75529/fileData.do?recommendDataYn=Y>에서 2024년 3월 9일 인출.
- 보건복지부(2023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현황 >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에서 2024년 3월 7일 인출.

2024년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 및 지원 방안 모색

주제발표 II

운영주체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사례 ①

서초구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가족중심 조기개입

최진희 센터장(서초아이발달센터)

서초구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개입



서초아이
발달센터

최진희

설립 배경

서초구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

(제정) 2021.05.03 조례 제1322호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장애의 조기발견과 정상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4.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정상발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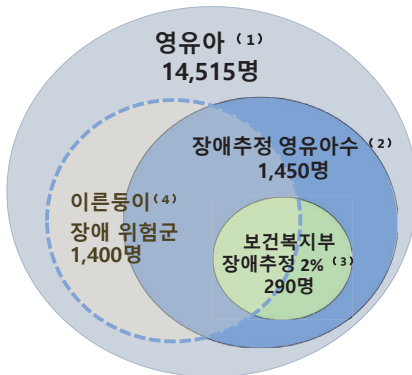
연 혁

- **2014년~2015년**
가족중심 조기개입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 **2016년 1월**
서초구청 예산지원. 특수교사 및 치료사 총 3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2020년**
서초구 이른둥이 무료 조기개입 실시 (구청요청)
비대면 영상 조기개입 프로그램 실시
- **2021년**
『서초아이발달센터』 독립기관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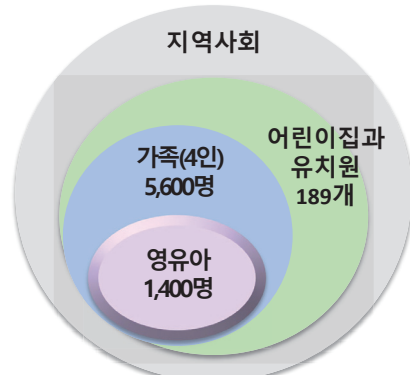
서초구 현황

서초구 영유아 현황

서초구 장애 및 위험군 추정 영유아 수



장애 및 발달지연이 끼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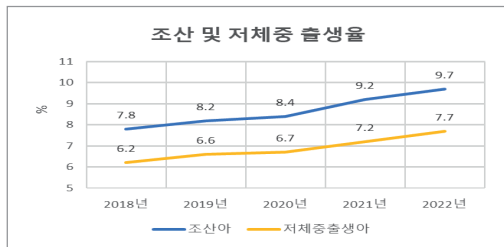


(1) 0-만5세 서초구 영아 수 참고: 전국 1,867,012명 (국가통계포털 2023년 발표)
 (2) 전체 영유아의 10% (미국질병통계국 2014년)
 (3) 전체 영유아의 2%를 장애로 추정 (보건복지부)
 (4) 이른둥이 (조산아+저체중아)는 전체 신생아의 9.7%, 7.7% (통계청자료, 2023년 발표)

현황

장애 및 위험군 영유아 증가

- 전체 아동의 10% 이상 추정
- 장애 및 조산아·저체중아 등 장애 위험군 영유아 발생률 갈수록 증가 <그림 참조>
- 서초구가 전국 평균 보다 산모 출산연령이 높음(노산)
- 부적절한 양육환경(예, 아동학대 및 방치)에 따른 발달지연 및 장애 증가



가족의 어려움

- **2020년도 장애아동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가 장애를 최초로 인지하는 시기
- **1세 미만'(25.4%),**
하지만 장애를 최초로 진단받는 시기:
- '5세 이상'(39.6%)이 가장 많음

장애진단에서의 어려움

- **장애를 인정하지 못해서(41.0%)**
- 장애관련 검사비용이 많아서(15.5%)
- 의사가 아동의 장애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5.6%)

조기개입과정에서의 어려움

-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몰라서(46.8%)**
- 어떤 서비스가 적절한지 몰라서(19.6%)
- 서비스 비용이 부담되어 (17.9%)

독립 센터 설치 이유

서초구 장애 및 위험군 영유아를 위한 조기개입 기관 필요

- 학령기·성인기 장애 관련 정책과 지원시설은 많지만, 영유아기 발달지연 및 장애 조기발견, 조기개입을 위한 일원화된 공적 지원기관 없음
-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 조기개입 제도로** 발달지연, 장애, 위험군 영유아와 가족을 지원

접근성

- 장애 관련 기관에 대한 부모의 거부감 (심리적 접근성)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물리적 접근성)
- 병원보다 쉽게 발달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공적 기관(신뢰성)

센터 미션 비전

미션(Mission)

발달 지연,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유아와
그 가족의 건강한 출발

비전(Vision)

장애(발달지연) 영유아 걱정 없는 서초 : 조기발견, 조기개입
장애(발달지연) 영유아 정책 일류 도시 서초 : 지역연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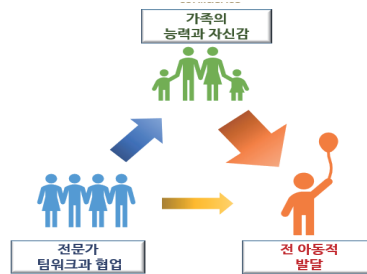
가족중심 조기개입 소개

- 발달지연,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유아(출생~만 6세이전)와 가족을 동시 지원하는 방문형 서비스
- 교사 · 재활치료사(특수교육,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의 부모코칭 및 가족지원 (서비스코디네이터)의 종합 서비스 시스템

가족중심 조기개입 소개

▪ 목적

가족 역량을 강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영유아 발달을 촉진하고,
영유아와 가족의 안정된 삶을 지원



가족중심 조기개입 소개

▪ 효과

- 영유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장애예방 및 장애에 의한 부정적 영향 감소
- 가족의 안정된 삶
- 학령기·성인기 삶의 질 향상
-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가족중심 조기개입 소개



지역기관 연계 서비스 체계

- **상호 의뢰**
(진료, 조기개입, 어린이집 서비스, 상담 등)
- **협업**
(조기발견 후 모니터링, 사례관리, 교육, 등)
- **지자체**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한 홍보·의뢰 및 정보·제도 지원)
- **지역 연계기관**
 보육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치원)
 상담기관 (가족지원센터)
 기타 (나비코칭)

서비스 제공 방식

원스톱 서비스

- **종합적 일원화된 시스템**
접수부터 서비스 제공 후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전이까지
- **동일한 서비스팀**이 모든 과정을 시행
- **평가 후 즉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방식

찾아가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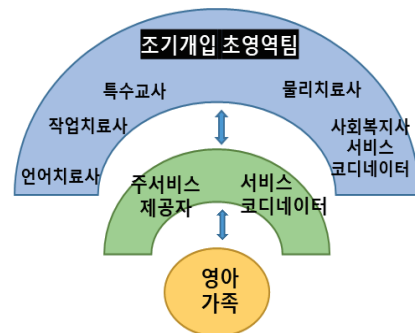
- **가정방문**(어린이집)을 하여 **일상생활 활동**에서 영유아 발달촉진
- **부모코칭**으로 **가족역량 강화**
치료사나 특수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이 영유아의 발달촉진



센터 운영 방향

효율적 서비스

- **주서비스제공자** 모델 사용
 - **조기개입팀**의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의 주서비스 제공자가 전반적인 발달 지원 (초영역팀 접근)
 - 일관성 있고 효율적 치료 · 교육 · 가족지원
- **서비스코디네이터**
가족지원과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내용

분류	대상	내용
조기개입	0~36개월 발달지연 및 장애 영아	- 발달평가 및 양육코칭 - 가정 및 어린이집 방문서비스 - 서초구 : 방문 서비스 - 기타지역 : 화상조기개입
	31~학령전 발달지연 및 장애영아	- 발달평가 - 단기코칭 (5개월 또는 12회기) - 서초구 : 방문 서비스 - 기타지역 : 화상조기개입
서초 이른둥이 프로그램	서초구 이른둥이 - 조산아(재태주수 37주 미만) - 저체중아(출생시 2.5Kg 이하)	- 발달평가 및 양육코칭 - 가정 및 어린이집 방문서비스 - 서초구 : 방문 서비스 - 아동발달 모니터링
피질시각장애아동 지원	피질시각장애 의심 아동	- 피질시각평가 - 시각발달 상담 및 지원
어린이집 지원	서초구 어린이집	- 교사 코칭 - 발달평가 - 부모상담
지역기관연계	서초구 등의 관련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가족지원센터, 보건소, 병·의원 등과 연계체계 구축
가족교육 및 상담	조기개입 참여 가족 및 양육자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 가족 욕구에 맞춘 교육 - 발달상담
조기개입 확산	지자체, 전국 장애인복지관, 기타	- 타기관/지자체에 서초조기개입 소개/ 자문 - 보건복지부 모델 개발 사업 참여

감사합니다



서초아이
발달센터

2024년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 및 지원 방안 모색

주제발표 II

운영주체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사례 ②

우리아이 발달 신호등

송정 센터장(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우리 아이 발달 신호등

송 정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목차

- I. 우리 아이 발달 신호등
- II. 영유아 발달지원 교육: 부모교육
- III. 영유아 발달지원 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 IV.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I . 우리 아이 발달 신호등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발달지연(또는 장애가 예측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와 상담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적 개입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 2021년 8월 첫 시범사업 시작, 현재까지 운영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I . 우리 아이 발달 신호등

- 사업대상 광명시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24개월 – 취학 전까지)
- 사업시기 연중 (매년 1월 전년도 사업평가, 반영 후 사업계획)
- 사업내용 영유아 발달검사 + 전문가의 해석상담
- 전 문 가 센터 상담전문인력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경력자, 임상심리 자격)
- 참여비용 검사 및 상담 전액 무료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I . 우리 아이 발달 신호등

● 사업방법 및 절차

- 홍보: 매월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 홍보
- 신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 접수 시, 신청자 성명, 가족구성원 및 자녀 관련 정보, 신청사유 발달검사를 통해 알고 싶은 부분(주 호소 문제)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영유아 발달 체크리스트 실시 (결과 등록)
 - 연령별 발달 이정표를 부모가 검사를 통해 확인

I . 우리 아이 발달 신호등

● 사업방법 및 절차

- 1차 방문: 예약신청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센터 내방
 - * 전문가와 부모의 사전상담 (20분): 주호소 문제 확인, 영유아 스크리닝
 - * 영유아 발달검사 & 행동관찰 진행 (60분-90분)

[공통] K-CDI (Korean-Child Development Inventory, 양육자 보고식)
 한국형 Denver II (아동발달 조기선별검사, 검사자 평가용)
 SMS (social maturity scale, 사회성숙도)

[추가] 언어 - CBCL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사회성 관련 - 기질, 부모양육태도, 투사검사, 문장완성검사

I . 우리 아이 발달 신호등

● 사업방법 및 절차

- 2차 방문: 예약상담일에 부모 혼자 센터 내방
 - * 상담동의서 작성
 - * 영유아 발달검사에 대한 해석상담 진행 (40-50분)
 - * 영유아에게 필요한 적절한 개입방법에 대한 가정연계자료를 전달, 안내
 - * 전문적인 치료지원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관내 이용가능한 병원 및 발달전문기관 등에 관한 정보 안내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I . 우리 아이 발달 신호등

● 사업평가

- 2021년 시범사업 기간 부모의 관심이 높았음 → 본 사업 진행
 - * 사업실적: 2021년 30건 → 2022년 69건 → 2023년 126건
- 현재까지 동 사업에 대한 부모의 참여와 관심은 매우 높음
 - * 높은 신청률, 접수 조기마감, 접수마감 이후 신청 문의 쇄도
 - *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일 취소 건 발생
 - * 2022년부터 결원발생 최소화 장치 마련
 - 예) 당일 결석 페널티 적용, 대기자 접수, 안내문자 반복 전송 등 신청자 관리 철저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I. 우리 아이 발달 신호등

● 사업평가

- 동 사업에 참여한 부모의 만족도 조사 시행 결과 (2023년 기준)

*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만족 95% 이상

* 사업에 대한 의견

- 발달에 맞춰 잘 크고 있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막막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거 같아요
- 자세한 설명으로 아이를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 선생님이 아이와 1:1 대면으로 관찰해서 파악해주니 더 신뢰가 갑니다
-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아이만의 솔루션을 제공받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 집에서 훈육하는 어떤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등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II. 영유아 발달지원 교육: 부모교육

● <조금 느려도 괜찮아> 시리즈 교육

- (개론)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 발달 이해하기, 조기선별 및 지원

- (발달영역별) 발달편, 놀이편으로 연결하여 가정에서 발달지원방법 안내

	이론편	놀이편
신체	신체발달이 늦은 우리 아이	우리 아이 대소근육 발달을 돕는 놀이
언어	말이 늦는 우리 아이, 괜찮을까?	우리 아이 언어발달을 돕는 놀이
사회성	또래와 어울리기 힘든 우리 아이	사회성 발달을 돕는 놀이와 상호작용
정서	감정조절이 힘든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아이 감정조절을 돕는 놀이
인지	산만한 우리 아이, 왜 그럴까?	우리 아이 집중력 향상을 돕는 놀이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II. 영유아 발달지원 교육: 부모교육

● <궁금한 우리 아이 발달 이야기> 시리즈 교육

-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강좌와 발달지원에 대한 지원 강좌 연결하여 진행
-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궁금증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part 1	- 영유아기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
기본편	- 발달영역별 주요한 발달적 과업 및 지표에 대한 이해
part 2	-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지연, 관찰
심화편	-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한 양육과 대처방법

궁금한 우리아이 발달이야기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나이에 한두개 안습은 아닐까요?"
 아이가 잘 자라는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 때문에 고민하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에 관해 부모강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PART 1 "우리아이 잘 자라고 있나요?"
 강의일시: 2023. 10. 24. (화) 10:00 ~ 12:00
 강의내용: 전반적인 아동발달 이해,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발달적 과업 및 지표에 대한 이해

PART 2 "가정내 지원은 어떻게 할까요?"
 강의일시: 2023. 11. 21. (화) 10:00 ~ 12:00
 강의내용: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지연, 발달지연 시 소아정신과원에 대한 적절한 양육 및 대처방법

강의장소: 센터 지하 1층 새빛강당
 강의대상: 관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강사: 강지연

안내사항

- 교육 (일)은 13시에 수강안내 문자를 문자 발송한 경우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프로그램 참여시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센터 앞 공영주차장(광명3동공)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본인부담)
- 문의: 02-899-0163 (발달지원상담팀)

광명사육아종합지원센터

III. 영유아 발달지원 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 <발달이 느린 영유아 이해와 지원> 시리즈 교육

- 관내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교육 운영

- (1강) 발달이 느린 영유아 이해와 조기선별
- (2강) 발달이 느린 영유아 지원하기: 신체발달편
- (3강) 발달이 느린 영유아 지원하기: 언어발달편
- (4강) 발달이 느린 영유아 지원하기: 사회정서발달편
- (5강) 발달이 느린 영유아의 부모와 상담하기

IV.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발달지연(또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가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영유아 행동관찰을 통해 발달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문제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보육교사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지연이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중재방법 등에 대해 코칭 해줌으로써 영유아 행동지도능력을 향상

● 2016년 6월 첫 시범사업 시작, 현재까지 운영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IV.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 사업대상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사업시기 상반기/하반기
- 사업내용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 방문
신청 학급 영유아 행동관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상담과 코칭
- 참여비용 검사 및 상담 전액 무료

IV.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 사업방법 및 절차

- 홍보: 상하반기 센터 홈페이지, 어린이집 업무연락 등을 통해 홍보
- 신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교사가 신청
 - * 신청서에 모니터링 받고 싶은 영유아에 대한 발달정보 기록
 - 사전에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진행 (K-DST) 결과 송부
- 전문가와 방문날짜와 시간 조율
- 어린이집 동 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안내

IV.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 사업방법 및 절차

- 방문: 방문예약일에 전문가가 어린이집에 방문
 - * 어린이집 원장 상담 (10분)
 - * 해당학급 교사 인사 및 학급 입실
 - * 학급 영유아의 놀이행동 관찰 (오전자유놀이시간 관찰) (90분)
 - * 해당학급 교사상담과 코칭 (20분)
 - 교사 주 호소문제에 대해 심리, 발달, 행동적 측면에서 코칭 상담 진행
 - 추후 부모상담 연계 실시 가능

IV.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 사업평가

- 2016년 시범사업 후 원장, 교사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았음 → 본 사업 진행
 - * 사업실적: 지난 8년간 매년 최소 40개-최대 101개소 진행
- 동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95.2% (2023년 기준)
 - *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영유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인식 변화
 - * 전문가 소견을 부모상담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
 - * 센터 내 놀이치료 및 언어치료와 연계 진행
 - * 2회기 이상 영유아 관찰 지속 요구 → 연속방문 모니터링 진행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감사합니다!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 및 지원 방안 모색

주제발표 II

운영주체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사례 ③

어린이집 원아의 발달지연을 위한 놀이치료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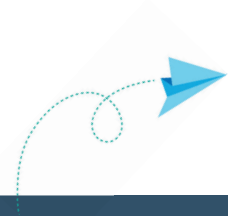
홍기묵 소장(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前 조은어린이집 놀이치료사)



한국보육진흥원 주최
: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개입 및 지원방안 모색 포럼



어린이집 원아의 발달지원을 위한



놀이치료 운영사례

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소장 홍기묵
(前 조은어린이집 놀이치료사)
memo110@hanmail.net



목 차

- | | |
|--------------------|--------------------|
| I. 어린이집을 위한 결단 | V. 부모지원 프로그램 |
| II. 놀이치료 구조화와 실시방법 | VI. 코로나 시기의 부모지원 |
| III. 놀이치료 사례 | VII. 어린이집 놀이치료의 의미 |
| IV. 집단 프로그램 | VIII. 제언 |

I. 어린이집을 위한 결단

1. 어린이집 상황

- 서울시에 위치한 원아 70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2. 원아 가정상황

-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의류 하청일, 일용직 노동을 하는 부모가 많았음
- 조손 가정, 빈민가정, 한부모가정인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원아 돌봄 수준이 낮은 편임

3.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제기

- 대체로 돌봄이 결핍되어 있고 안정적인 양육이 어려운 영유아의 성장환경이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개별 유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보육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발견하게 됨
- 영유아, 교사,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놀이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

4. 놀이치료실 실시 배경 (교사, 영유아, 부모)

1) 교사의 어려움

- 교실에서 정서행동문제, 발달지연 영유아가 발견되었지만, 교사의 보육과 교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함
- 원아의 성장환경에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교사가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
(갑작스러운 이혼한 엄마 방문, 조손 가정 유아의 돌봄 문제, 발달지연 유아의 발견과 부모의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등등)
- 일과 운영에서 원아의 개별 어려움으로 인해 교실 구조화의 어려움
(놀이지원, 교실 영역 활용, 교실규칙과 개별 유아지도의 어려움)
- 교사의 심리적소진

4. 놀이치료실 실시 배경 (교사, 영유아, 부모)

2) 영유아의 어려움

- 연령에 적절할 놀이와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발달지연으로 인한 정서행동문제
- 양육환경의 어려움으로 발달지연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함
- 정서행동문제로 인해 발달지연을 초래하게 됨

3) 부모의 어려움

- 자녀의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무리한 요구가 발생함
- 발달지연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여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Ⅱ. 놀이치료 구조화와 실시방법

1. 놀이치료 알림과 보육교사와 연계

1) 홍보

- 가정통신을 통해 놀이상담실 운영에 대해 알리고 신청자를 모집
- 놀이상담이 필요성이 제기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모상담을 통해 교사와 원장이 직접 소개

2) 교사교육

- 교사연수를 통해 문제행동과 발달지연, 놀이치료에 대한 교육실시
- 교실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례회의 : 문제행동 정의, 개입방안, 교사지원

2. 놀이치료 구조화

1) 놀이치료 실시 방법

- 주1회 놀이치료, 부모상담, 교사면담 실시(격주 또는 필요할 때)

2) 놀이치료 장소

- 어린이집 내의 빈공간을 치료실로 개조해서 사용함.

3) 놀이치료 비용

-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익자 일부 부담,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지원

4) 놀이치료사

- 놀이치료사: 상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놀이치료사

Ⅲ. 놀이치료 사례

1. 양육자의 부재

- 조손가정의 ADHD, 뇌전증이 있는 유아

놀이치료, 조모상담(추후 부상담), 병원 진료, 약물치료

2. 발달지연

- 부모의 경계선지능(추정)과 발달지연 유아

놀이치료, 모상담(추후 부상담), 병원 진료(장애아등록), 특수반 연계(병설유치원)

3. 언어발달 지연

- 늦은 발견으로 인한 언어발달지연과 경계선 지능 유아

놀이치료, 모상담, 언어치료연계, 병원진료 연계(장애등록)

4. 방임으로 인한 발달지연

- 부모 사정으로 인한 발달지원의 부재로 인한 발달지연 유아

놀이치료, 부모상담, 병원 진료(장애등록), 인지언어치료연계

IV. 집단 프로그램

1. 방법1

- 만 2세반: 치료놀이 집단프로그램 15회기

2. 방법 2

- 만5세 : 사회성프로그램

3. 방법 3

- 놀이치료 유아를 중심으로 사회성프로그램

V. 부모지원 프로그램

1. 부모상담

- 놀이치료 영유아 부모상담 – 주1회

2. 다회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 영유아 발달과 놀이
- 애착증진을 위한 부모양육방법
- 사회성 발달을 위한 부모양육 방법

VI. 코로나 시기의 부모지원

1. 영유아 지원과 부모지원의 방식 변화

- 코로나로 인해 놀이치료를 단기 프로그램으로 전환

2. 방법: 놀이5회기, 부모상담 2회기

- 영유아 놀이평가와 놀이를 통해 부모상담과 교사상담으로 발달과 기질 성격특성, 효과적인 양육방법, 교사개입방을 중심으로 상담

VII. 어린이집 놀이치료의 의미

1. 어린이집 운영

- 영유아의 욕구를 파악하고 발달지원을 위해 교사, 영유아, 부모, 전문가의 연계를 통한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
- 특별한 욕구를 지닌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방향의 기초를 제시함

2. 교사 지원

- 특별한 욕구를 지닌 영유아의 지원방안을 전문가와 연계하여 교사개입방안을 구체화 함
-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함

3. 영유아 지원

- 개별 발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치료를 연계하고 초등학교 진학 후에도 안정적인 개입이 가능해짐
- 어린이집, 부모, 교사의 인식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짐

4. 부모지원

- 양육정보, 지원을 통해 전문가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음

Ⅷ. 제안

1. 특별한 욕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방안

- 발달 및 상담 전문가와 현장을 연계
- 영유아 기본 발달검사를 통해 개별발달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2. 교사 지원

- 사례연구를 할 수 있는 교육이 기회마련과 지속적인 사례지원

3. 부모지원

- 개별 영유아에 대한 상담교육의 기회를 강화 – 제도적으로 부모가 교육을 받는 방안을 실시

4. 재정지원

- 전문가가 현장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금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지원

감사합니다

2024년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 및 지원 방안 모색

주제발표 Ⅲ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 및 지원 방안 모색 포럼」

[2024. 3. 28. 15:50-16:20]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목 차

- I. 조기 개입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원인)
- II.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방법)
- III. 과제: 연계성 있는 지원을 위한 협력

본 연구의 체계

* 협동연구로 한국아동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와 협력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 교사 실태조사 - 교사용 검사 도구 개발 - 교사 지원 자료 개발	- 부모 요구조사 - 부모용 검사도구 개발 - 부모 지원 자료 개발	- 검사도구 표준화 -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시범적용	-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협력체계 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성과확산

I. 조기 개입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원인)

Step 1.

- 조기개입 대상을 선별하는 첫 관문, 영유아발달평가(생후 9개월 부터)
 - 전국 영유아의 2.43%는 심화평가권고 대상(2021년 기준)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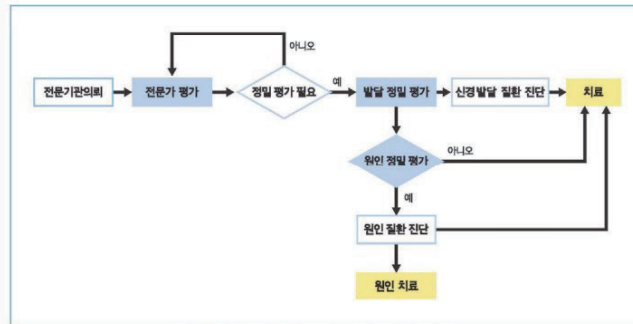


그림. 전문기관연계로 의뢰된 발달 유소견자에 대한 전체흐름도

Step 2-1. 정밀검사 후 장애등록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아동복지법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안내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를 통해서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령 별표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장 제32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입소
(특 제17조) 특수학교 또는 유치원의 특수학급 배치
(특 제18조) 장애영아-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

Step 2-2. 장애등록 없이 관련 서비스 이용

대상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적용대상 범위
만6세 이상 18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 -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만6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읍, 면, 동 담당자는 장애유형별로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김은설 외(2023: 38)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유치원 일반학급 재원하며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만6세 미만)이 있으면,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바우처서비스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총칙 제2조제1호)
-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장애등록아동이 없으므로 필요 특수교사 지원은 받지 못해, 담임교사가 모두 담당 해야 하는 상황임.

II.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방법)

Step 1 → Step 2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의 어려움

- 우리나라 취원율을 보면 2021년 기준 0-2세 80.8%가 어린이집을, 3-5세 유아 98.2%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 (KICCE, 2022)
- 가정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관찰하여 부모님께 센터 방문을 권유하는 상황임
- 담당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판단한 근거(교사설문, 491명)(강은진 외, 2022)
 - 판단근거: 또래관찰 비교(42%), 특수교육전문가 자문(19%), 교사의 관련 배경 지식(15%), 발달평가 검사활용(14%)
 - 대처방법: 79%가 원장 및 관리자와 상의, 18%는 지켜본다고 응답
- 자녀의 장애위험을 판단한 근거(부모설문, 203명) (김은설 외, 2023)
 - 발달지연 인지: 19-24개월(27.6%) > 25-35개월(24.1%) > 13-18개월(17.7%)
 - 판단근거: 또래와의 비교(53.2%), 어린이집 등 교사를 통해(26.6%), 영유아건강검진 결과(15.3%)
 - 발달지연 상태 알아보기 위해 최초로 받은 검사: 52.2%가 없음

현 정부의 관련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해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제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아동진료체계 강화, 아동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장애, 다문화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 체계 마련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22)

전략 1. 종합적 양육지원강화-과제4.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발달지원기관 간 연계로 영유아 발달 검사-상담-(재활)치료의 연속적 지원 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교육부, 2023. 4)

유아교육진흥원을 연계해 발달 지연 및 정서 위기 유아에 대한 치료 지원 및 경계선 지능(장애위험) 유아에 대한 실태 파악. 지원 방안 마련

조기발견 관련 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특수교육법
제 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중략) 3.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략)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개정 2011. 12. 31., 2020. 12. 29., 2023. 6. 13.>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6. 1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⑥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절차,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13.> [시행일: 2024. 6. 14.] 제12조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법상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관련 규정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중략)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략)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김은설 외(2023: 41)

장애아동복지법	특수교육법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3. 6. 13.>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1의2.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④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6. 14.] 제9조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해외 사례 (강은진 외, 2022; 김은설 외, 2023; 황주희 외, 2021)

미국	독일	호주
컨트롤타워형	포괄적 조기 지원 및 열린 상담 서비스, 편입급여	영유아 파트너
장애인교육법(IDEA)	사회법전 제9권 제46조, 제4항에 근거한 (각 주의) 기본협약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을 위한 시행령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통해 만7세 미만 아동대상 영유아기 조기개입(ECEI) 시행
Part C 0~3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조기개입과 가족지원	포괄적 조기 지원 -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출생부터 입학 전까지 아동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지원	호주 전역의 6세 미만 발달 우려가 있는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 아동(의료진이나 전문가 진단 필요하지 않음)
3~5세 유아(Part B)는 주 교육청, 지역교육단체 담당, 0~2세 유아(Part C)는 주마다 상이 지역교육단체(LEA)는 특수교육대상 발견해 평가할 수 있도록 대중에 홍보 책임. 발견된 후에는 2일 이내 지역 내 Part C 단체에 평가 의뢰해야 함.	조기교육시행령: 간학문적 조기지원기관(IFE) 규정, 0~6세 영유아 대상 서비스로 진단, 상담, 치료, 안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으로 협력 서비스비용은 지역사회 담당기관과 의료보험이 공공 부담 “열린상담서비스”	자녀발달이 걱정되다면→영유아파트너→초기연결→조기지원(아동발달 부모워크숍, 일상생활지원 기술 및 전략 등) 또는 NDIS 신청 지원(NDIS 발달지연 기준 충족 시)

호주: 국가장애보험(NDIS)와 영유아 조기중재(ECEI)

ECEI: 가족 중심, 강점 기반 접근법

NDIA 자금이 지역 **영유아 파트너**에게 전달

(*전문가팀: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유아 교사로 구성)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관찰과 스크리닝 도구 활용한 선별, 필요시 진단받도록 연결

1단계: 영유아 건강지원, 놀이그룹, 교육보육기관 등 주요 지역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결

2단계: 초기지원과 단기조기중재 서비스(STEI)제공, 일반적 역량강화 및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 지원,

대체 서비스에 대한 정보 연계 및 역량 강화, 조기중재에 대한 교육 및 기관 의뢰-장애위험군 영유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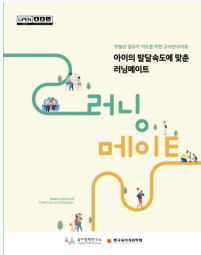
3단계: 장애 또는 발달 지연 받은 영유아가 NDIS에 포함,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받음.

Ⅲ. 과제: 연계성 있는 지원을 위한 협력

조기발견 및 지원의 용이성, 연계성 확보를 위한

1.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의 중요성 강조

- Step 1: 영유아 건강검진 →
- Step 2: (기관이용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
- Step 3: 관련 전달체계로의 연계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의료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위험군 영유아 지도를 위한 역량 강화 필요

2. 어린이집-유치원 발달지원 코디네이터(가칭) 파견

- 호주의 영유아 파트너에 준하는 교사와 학부모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 필요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방문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
 - * 별도의 전문가 진단이 없더라도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경미한 발달지연이 보이는 영유아에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조기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 기존 전달체계에 해당기능을 하는 팀 배치 또는 별도 센터 신설을 통해 인력관리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0조),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의제2호),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보육법 제7조) 외 보건서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1항. 4조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상담, 치료연계 지원

제2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략)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상담, 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 전문요원 등을 둔다

제5항. (중략)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보건복지부)

1-4. 육아 건강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 상담,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의3 개정을 통해 '영유아 발달지원 전문요원' 자격기준 규정 예정
- 영유아 발달 및 지원 관련 정보성 콘텐츠 제작, 배포 등 전문정보 제공 강화

- Step 1: 영유아 건강검진 →
- Step 2: (기관이용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
- Step 3: 발달지원 코디네이터(가칭) 파견 →
- Step 4: 관련 전달체계로의 연계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담당업무: 발달지연(장애위험) 영유아 발견 시 진단 및 지원 기관으로 연계

일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직)원 연수 및 멘토링, 방문 컨설팅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한 가족의 양육 역량 강화

지역 내 발달지원 네트워크 관리 및 협의체 운영

지역 발달지연(장애위험군) 발굴을 위한 데이터수집 및 공공의료센터와의 연계 등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 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인력에 대한 지역 내 컨트롤타워 및 지속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강은진, 최윤경, 2023)

3. 발달지원 네트워크 연계체계 마련

발달러닝메이트 센터 유형(강은진 외, 2022: 389-394) 중 복지 부분을 발체하여 수정 보완한 안임.

육아종합지원센터형

-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팀 배치
- 영유아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홍보
- 기관 방문 발달스크리닝 및 상담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복지관, 의료기관에 치료연계

지자체 독립센터형

- 센터장 외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 담당지역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 발달지원 네트워크 구축
- 영유아 및 가족지원 상호작용 코칭
- 발달지원 필요 영유아에 대한 치료적 개입

지역 장애인복지관 부설형

-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좌동)
- 영아 및 특수교육대상 가족 지원, 사회복지사 연계를 통해 취약가구 양육환경 개선 포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연계

거점 어린이집 형

발달지연(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발달지원 네트워크



거점 어린이집과 거점 유치원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별도 인력(특수교사, 장애 위험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을 배치하고, 협력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 모니터링,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선별과 센터 연계, 담당 교사와의 학습소모임 운영을 통한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방법 코칭, 학부모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

(강은진 외, 2022: 378-379)

4. 조기발견 및 지원의 용이성 확보

사각지대 없는 “정책 이름”: 영유아 건강검진 모니터링 체계 보완(강은진 외, 2022)

-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 및 내실화
- 심화평가권고 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무료지원
 - 정밀검사 결과 후 관련 제공 서비스 알람 및 신청 독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제출 독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특수교육 관련 인력(보조교사) 추가 배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제2항.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에 근거하여 주정부는 장애 및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 영유아 프로그램 중 가장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데, 장애진단을 받지 않아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

참고문헌

- 강은진, 권미경, 박창현, 최윤경, 박혜원, 최일선, 이경옥, 김형미, 양성은, 김영아(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 강은진, 최윤경(2023).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법과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유아교육연구, 43(3), 253-278. DOI : 10.18023/kjece.2023.43.4.012
- 김은설, 김아름, 김지현, 김희수, 전효정, 김민정, 고은경, 최일선, 김형미, 김영아, 김예진, 김용진, 최정원(2023).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I): 부모용 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황주희, 이한나, 김현승, 심석순, 최복천, 김용진, 김혜수, 김지민(202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비로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합니다. (ejkang@kicce.re.kr)

2024년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 및 지원 방안 모색



한국보육진흥원